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26 발의연월일: 2021. 4. 30.

발 의 자:신원식·박덕흠·지성호

양금희 • 추경호 • 황보승희

정진석 • 이만희 • 김승수

윤한홍 • 하영제 • 서병수

정희용 · 송언석 · 이헌승

김석기 · 정운천 · 윤두현

조해진 • 백종헌 • 윤영석

이철규 · 박성중 · 김미애

곽상도 • 조명희 • 김희국

윤재옥·정찬민 의원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 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식품 납품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 및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 납품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3(식품 납품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방부장
	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
	은 각 군, 방위사업청 및 조달
	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식품
	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의 식
	품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식품안전
	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
	급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